[별지 서식] 삭제 <2015.12.30.>

(뒤 쪽)

1.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.
2. 이 사람은 「대외무역법」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거나 금지된 물품등, 전략물자 또는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물품등에 대한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허가나 상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수출하려고 한 자의 사무소·영업소·공장 또는 창고 등에서 장부·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.
3.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.